PART 7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EU,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案) 초안 공개
2. EU, 1세대 바이오연료 상한 합의 최종 승인 예정
3. EU,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案)
4. 미국, EU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난색 표명
5. 미국, 통일된 GMOs 표시 법안 하원에 재상정
6. 미국, NAFTA 무역 파이프라인 운송 점유율 고조
7. FAO, 비옥한 토양은 식량 생산의 기반
8. 인도, 카르나타카주 농민 금융지원 등 중점 예산안
9. 베트남, 농업투자 시 토지취득·유통 등 과제
10. 네덜란드,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로 농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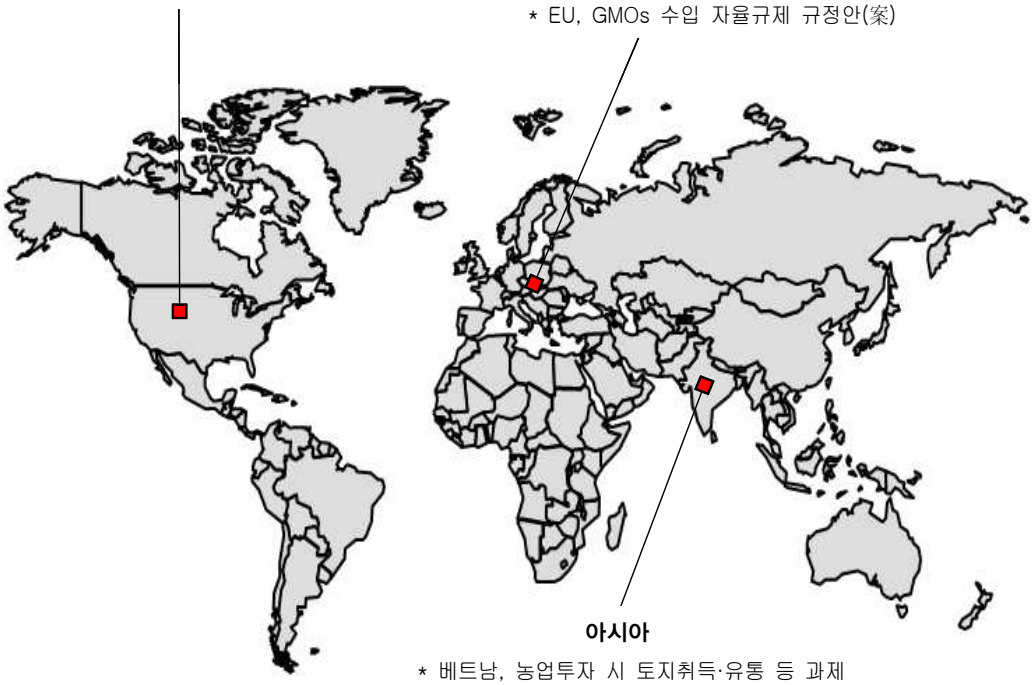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5. 5)

미국

* 미국, 통일된 GMOs 표시 법안 하원에 재상정
* 미국, NAFTA 무역 파이프라인 운송 점유율 고조
* 미국, EU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난색 표명

EU

* FAO, 비옥한 토양은 식량 생산의 기반
* 네덜란드,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로 농업 영향
* EU,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案) 초안 공개
* EU, 1세대 바이오연료 상한 합의 최종 승인 예정
* EU,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案)



아시아

* 베트남, 농업투자 시 토지취득·유통 등 과제
* 인도, 카르나타카주 농민 금융지원 등 중점 예산안

EU,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案) 초안 공개

EU, 외원국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 초안 공개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EU가 허용한 식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작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안 초안을 공개함.

- 현재 EU 법에 따르면 회원국의 개별 관심사항은 EU 전체의 공익을 위한 논의에서 고려될 수 없음.

❍ EU가 허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재배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이 건강과 환경 이외의 사유로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데 유사한 규정이 식용 및 사료용 GM의 수입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임.

- 식용 및 사료용 GM 수입에 관한 규정안은 GMOs 재배지침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 동 제안서에 적용되었음.
- EU 보건·소비자 감독국(DG Health and Consumers)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은 집행위원장(Jean-Claude Juncker)의 지시에 따라 GMOs 입법체계에 대해 지난 6개월간 검토하였음.
- 그 제안서는 4월 22일 혹은 그 다음 주 집행위원단(College of Commissioners)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됨. 이하에서 검토하는 규정안 초안은 아직 확정된 최종안이 아님.

가중다수결로 표결 미실시

❍ 규정안 초안은 "GMOs와 식용 및 사료용 GM에 관한 집행위원회 예비 결정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가중다수결(a qualified majority)로 표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결정은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EU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라고 명시함.

- 현재 회원국들은 GMOs가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하지만 공개될 규정안 초안에서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제기한 결정에 반대하는 이슈는 대부분 과학적 근거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각국의 사회적 논쟁에 대한 다른 관점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식용 및 사료용 GM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 현재 EU 규정은 전체 회원국의 공익을 위한 주요 논쟁분야에서 개별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임.
- 따라서 EU집행위원회는 개별 회원국들의 민주적 선택권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EU 의회와 이사회가 의결한 GMOs 재배지침(Directive (EU) 2015/412)을 식용 및 사료용 GM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승인 절차

❍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채택된 법안은 회원국들이 GM작물 재배면허를 비과학적인 근거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EU 승인 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금번 규정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함.
- 규정안에는 GMOs와 GM식품 인증을 위한 EU 규정(Regulation (EC) 1829/2003)에 따라 실질적인 승인 절차와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EU 전체 영토에서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보조성과 비례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 proportionality)

❍ EU는 제안된 규정안의 입법 검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의 소위 보조성 원칙을 사용함.
- TFEU에 따르면 EU의 정책은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에 속하지 않는 한 제안된 법안의 목적을 회원국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함.

❍ 규정안 초안에 따르면 EU의 법률 체계는 위원회에서의 투표 외에는 GMOs의 안전성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제기하기에 많은 제약을 내포하고 있음.
- 현행 규정안은 개별회원국들이 자국 영토에서 GMOs와 식용 및 사료용 GM의 사용을 안전성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에 의해서도 규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또한 TFEU의 비례성 원칙상 EU의 정책은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초안은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GMOs 법규에 따라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는 생산물에 대해, 이들이 기준치 이하의 GMOs나 식용 또는 사료용 GM을 소량 포함하고 있더라도 회원국들이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계와 비정부기관(NGOs)의 반대

❍ 지난 주 EU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 유럽바이오산업협회(the European Association for Bioindustries, 약칭 EuropaBio), 유럽종자협회(the European Seed Association), 유럽곡물거래업자협회(COCERAL) 등 EU의 농식품계열사들은 식용 및 사료용 GMOs 수입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힘.

- 개별 회원국의 수입승인 자치권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안은 EU의 식량 및 사료 시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기존의 법률 체계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환경운동단체는 실제 문제는 GMOs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빈약하고 불완전한 EU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안서의 적절한 이행에는 실질적, 법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지구의 벗 유럽(Friends of the Earth Europe)은 EU집행위원회의 규정안 초안에는 법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는 생명공학 기업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함.
- 식품 캠페인 책임자(Mute Schimpf)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서는 회원국들이 식용 및 사료용 GM 수입승인에 대한 권한을 허용할 것을 약속하지만, 법적 근거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함.

수입승인을 대기하는 17개의 GM작물

❍ EU집행위원회의 수입 승인을 기다리는 GM 작물은 현재 17개임. 이들 모두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승인과 함께 EU 의사결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EU이사회의 표결에서도 "의견 없음" 상태임.

- 예정된 EU집행위원장(Juncker)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입승인 보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EU집행위원회는 어떤 권한에 대해서는 예정된 일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수입승인이 보류된 대부분의 GM작물은 동물사료용이며, 그 중 일부는 수입면허 갱신을 대기하고 있음.

❍ 사료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계는 수입승인 보류가 EU 축산업에 미칠 타격을 경고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입승인을 요청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 규정안 내용을 고려할 때 5월 말 경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부터 수입승인이 보류된 GM작물은 다음과 같음.
- 옥수수(MON87460), 유채(GT73), 콩(305423), 콩(MON87708), 콩(MON87705), 콩(MON87769), 콩(BPS-CV127-9), 옥수수(T25), 면화(T304-40), 옥수수(NK603), 유채(MON88302), 면화(LL25xGHB614), 면화(MON88913), 면화(MON531), 면화(MON1445), 면화(MON531x1445), 면화(MON15985).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4.04.17)

EU, 1세대 바이오연료 상한 합의 최종 승인 예정

❑ 유럽의회, 바이오연료 정책 개정안에 합의하고 최종 승인 예정

❍ 유럽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Envi)는 EU 바이오연료정책 개정안에 합의하고 최종 승인 대기 중임.

-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4월 14일, 개별 회원국들과 제1세대 바이오연료의 사용 상한을 7%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예비 승인함.
-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제1세대 바이오연료의 사용 비율을 낮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 바이오연료정책 개정안은 찬성 51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가결됨.

❍ 유럽의회 의원들은 최근 몇 주간 바이오연료에 대한 EU법안 변경을 위한 삼자협상을 개최하였지만 목표했던 타결안은 진전이 없었음.

- 그러나 이사회(Council)는 이번 주에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Envi)를 통과한 유럽의회 의원(MEP)의 최종안에 동의함.

❍ 개정안은 2012년 EU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제안서를 기초로 함.

- 제안서에 따르면 EU의 운송용 연료에서 식용작물 추출(제1세대) 바이오연료 사용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의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을 5%로 축소함.

❍ 유럽의회 의장(Nils Torvalds)은 합의안이 매우 야심적이어서 목표로 했던 모든 것을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언급함.

- 제2세대 바이오연료(advanced biofuel)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수용력이 상이하며 접근법이 다양함.
- 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제2세대 바이오연료 가속화 추진에 대해 의욕적이었지만 간접토지이용변화(Indirect Land Use Change, ILUC) 요소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컸음.

❍ 유럽의회 의원들이 최종 합의한 개정안은 EU집행위원회와 석유회사들이 매년 보고하는 간접토지이용변화(ILUC)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탄소회계에 의무적용 사항은 아님.

-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제2세대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의 자발적 목표를 0.5%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
-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유럽의회 의원들은 제1세대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최대 6%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사회에서 제시한 7% 상한 설정에 동의함.

❍ 유럽의회는 총회에서(4월 27~30일) 최종 개정안을 임시 승인(rubber-stamp) 후에 이사회의 공식적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국들은 2017년까지 최종 개정안에 따라 법안을 제정해야 함.

❍ EU집행위원회가 제1세대 바이오연료 자원의 의무사용 상한선 설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한 이후 3년 동안 산업계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가 고갈되고 있다고 비난함. 그 결과 최근 EU의 운송용 수송연료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EU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의 소비 비중은 4.7%였으며 운송 및 환경 분야 비정부기구(NGO)의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분석 결과, 제1세대 바이오연료 비중은 2020년까지 8.6%에 달할 전망임.

간접토지이용변화(ILUC) 관련 타협

❍ 간접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논란: 식량생산이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로 대체될 경우 대체작물 재배를 위해 산림과 탄소흡수지역이 축소되어 간접적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ILUC에 따른 탄소회계를 적용한 사례가 많으나 신뢰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함.

❍ 유럽의회 의원은 가장 오염이 심한 바이오연료를 찾아내기 위해 2020년 이후부터 ILUC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탄소회계에 포함시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요청함.

- ILUC 보고 시 탄소배출량을 평균치로 할 것인지 혹은 최대치와 최소치의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

- ILUC 보고와는 별개로 타결안은 향후 예상되는 입법 시 포함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ILUC 회계법을 개선하도록 이사회에 지시함.

❑ 제2세대 바이오연료

❍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Envi) 의원들은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제2세대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세부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 유럽의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상의 10% 목표에 제2세대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비중 1.25%를 세부목표로 주장하였음.
- 결국 회원국들의 제2세대 바이오연료 사용 비중 0.5%의 자발적 세부목표에 동의함. 이는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적절한 배려(due regard)임.
- 하지만 유럽의회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생산자 추가 인센티브로서 바이오연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달성을 위해 이중 계산될 것으로 판단함.

❍ 회원국들은 생산 잠재력의 제한이나 기술적 또는 기후적 제약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전력이용 운송 확대라는 국가 정책 목적상 이미 에너지 장려금을 배정하였다는 이유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음.

❑ 유럽의회 의원 반응

❍ 최종 합의안은 이번 달 말 유럽의회 의원(MEP) 총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비판적인 녹색당 의원(Green MEP)들을 비롯하여 의회 내 다양한 그룹의 이견이 존재함.

- 녹색당 의원 대변인(Bas Eickhout)은 금번 협상은 EU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미흡하다고 언급함.
- 또한 금번 법안은 EU가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데 실패한 것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함.

❍ 반면 중도우파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은 개정안이 EU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에탄올과 디젤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제2세대 바이

오연료 개발을 위한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옹호하였음.

❍ 사회민주그룹(Socialists and Democrats Group, S&D)은 협상 타결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내부 협력이 결여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타결안이었다고 평가함.

- 또한 이사회는 처음부터 타결 의지가 별로 없었으며 산업계의 로비에 의해 삼자협상은 거의 속임수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사회민주그룹(S&D) 의원(Matthias Groote)은 이사회가 삼자협상의 미흡한 타결안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향후 협력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그룹(S&D)은 개정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정안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소위 EU의 에너지연합(Energy Union, EU)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생산 공정(Biofuel production processes)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대체연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4.17)

EU,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案)

EU집행위원회, 새로운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식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수입승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을 제안함.

-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GMOs 수입 자율규제관련 규정안은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GMOs 재배지침(Directive (EU) 2015/412)에 크게 영향을 받음.
- GMOs 재배지침은 회원국에게 자국 영토 내 GMOs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임.

❍ 회원국 영토에 대하여 GMOs 수입 자율규제를 허용함으로써 회원국의 자치권과 EU 승인체제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MOs 수입승인절차인 통일된 위험관리체제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과학적 근거에 따른 위해성평가와 EU승인 표시제(labelling)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임.

GMOs 규정안 주요 내용

❍ 새로운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 및 사료용 GMOs가 EU 수입승인을 받더라도, 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개별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회원국은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따라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EU법 및 WTO 의무화 규정과 양립가능한 정당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GMOs 규정안 배경

❍ 현재 EU법체계에 따르면,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과학적 검증절차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식용 및 사료용 GMOs에 한정하여 EU

시장 반입을 허용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평가에서 건강과 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된 GMOs 수입승인 결정은 이사회 표결을 통하여 결정함.
- 이사회 표결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EU집행위원회가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수입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함.

❍ 현재 EU 수입승인절차에 따른 의사결정방식은 회원국의 개별적 고려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GMOs에 대한 EU 수입승인절차는 2003년 이후 발효된 법률을 기초로 진행되었음.
- 다수 회원국이 GMOs 수입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이사회 표결 결과는 소수의 반대의견과 조직적인(systematically) 다수의 기권(no opinion)으로 인하여 회원국의 의견반영을 제한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 회원국이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반대보다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시사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GMOs 수입승인을 반대하며 제시하는 근거는 과학적 검증보다는 주로 자국의 사회적 우려 및 정치적 고려사항에서 기인한다고 함.

❍ 현재 EU 수입승인절차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의 검증과 이사회 표결 과정은 완료하였으나, EU집행위원회로부터의 수입승인 결정이 보류된 GMOs는 17개임.

- 현재 EU에서 수입이 승인된 식용 및 사료용 GMOs는 58종이며, 대부분이 사료용임.
- EU에서 소비되는 대두, 대두박(soymeal)과 같은 식물성단백질 사료부문의 60% 이상은 GMOs재배가 일반화된 미국, 중남미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정당화 절차 필요

❍ 회원국이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따른 수입제한 및 금지조치를 실행하고자하는 경우, 자국의 조치를 EU법, 비례원칙(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무차별 원칙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절차가 필요함.

- 정당화 절차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검증결과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으로 수용되는 대부분의 근거는 비과학적인 영역에 한정됨.

❍ 기(旣) 승인된 GMOs에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요인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

우, EU법체계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내 GMOs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회원국은 GMOs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EU집행위원회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90일간의 검토를 통하여 회원국 규제조치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4.24)

미국, EU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난색 표명

❑ 미국, EU의 새로운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난색 표명

❍ 미국정부는 EU가 GMOs수입승인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규제를 허용하는 규정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함.

- 4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관계자(Michael Froman)는 EU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은 EU의 국제적 의무와 양립되기 어렵다며 EU 새로운 법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함.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국과 EU가 높은 개방수준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EU의 규정안은 무역제한조치이며 양측에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비난함.

❍ 동 규정안으로 인하여 EU시장이 28개의 개별시장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EU 본연의 목표와 상충될 것임.

- EU는 거래 활성화를 통한 EU의 내수시장 강화를 목표로 함.

❍ 미국 정부는 EU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 수출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 2014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등으로부터 수입한 EU의 잠재적 GMOs 관련 상품(potentially affected products) 총 수입은 31억 유로임.
- EU 규정안에 따른 규제불확실성으로 인하여 GMOs 관련 상품무역이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EU집행위원회가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을 발표하자 EU의 식품 및 사료관련 회사 대표들과 비정부기구들(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은 서로 다른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

TTIP와 관련된 추측 제기

❍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미국-EU 제9차 TIIP협상이 뉴욕에서 개최되었음.
- 농업부문의 관세 및 비관세관련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음.

❍ 미국-EU TIIP 협상이 2016년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GMOs 수입관련 규정안의 제안 시기가 TTIP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음.
- EU가 TTIP협상 타결에 따른 GMOs의 EU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대비한 대안으로 GMOs 자율규제 규정을 제안하였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음.
- EU집행위원회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원국은 TTIP 협상에 따라 완화된 수입규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GMOs 수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원회는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은 EU 내부문제이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함.

미국 산업계의 반응

❍ 미국 대두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 ASA) 부의장(Richard Wilkins)은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은 EU의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EU 축산농가와 사료산업에 대한 타격은 육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EU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동 규정안은 EU 본연의 목표와 양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EU 본연의 목표는 세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된 경제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임.
- 그러나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는 하나의 경제조직체로서 과학화, 현대화 및 세계화된 경제에 대응하기 보다는 분리된 조직체가 될 것이라며 비난함.
- 또한 EU가 회원국의 GMOs 수입승인 결정에 따라, 자국민에게 생명공학(biotechnology)의 잠재적 성장비전을 제시하는 회원국과 그렇지 않은 회원국으로 분리될 것이며, EU 창립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역설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4.24)

미국, 통일된 GMOs 표시 법안 하원에 재상정

미국, GMOs식품 표시의 통일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하원에 재상정

❍ 3월 25일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식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하원에 재상정되었음. 연방 수준에서 GMOs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주법화(州法化)를 진행하는 곳도 나오고 있음.

- 단, 업계단체는 주마다에 상이한 규제가 도입되면 대응 비용도 증가하는 등 금번 움직임에 환영하고 있음.

각 주(州)별 움직임, 업체 및 생산자에 부담 가중

❍ 3월 25일, 공화당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의원(캔자스주(Kansas州))과 민주당 조지 케네스 버터필드(George Kenneth Butterfield) 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州))은 GMOs 식품 표시 관련 통일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 두 의원은 2014년 4월 9일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 있지만 심의되지 않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차 상정하였음.

❍ 미국에서는 GMOs 표시 의무 부과가 메인주(Maine州,) 버몬트주(Vermont州), 코네티컷주(Connecticut州) 등에서 주법화되었음.

- 식품 업체와 농산물 생산자는 이러한 주(州) 독자적 움직임에 따라 주(州)별 상이한 라벨 준비 비용 등으로 인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음.

구체적 규제 법안 성립 후 검토

❍ 금번 법안은 GMOs 식품 표시에 관한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모든 권한을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부여하고 있음.

- 단,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법안이 성립한 후 검토한다고 함.
- GMOs의 종류나 함유량 등 GMOs 표시를 해야 할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 업체와 생산자에게 얼마나 엄격한 규제가 되고 있는

지 현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음.

❍ 법안에서는 비(非)GMOs (Non-GMOs)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미국 농무부(USDA)의 인증을 생산자가 표시할 수 있는 구조 도입도 제안하고 있음.

❑ 업계단체, 환영 성명

❍ 금번 움직임과 관련하여 대형 업계단체인 미국농업인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FBF)과 미국 식음료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er Association, GMA)는 환영하고 있음.

❍ AFBF는 각 주에서 주법화되면, GMOs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소비자에게는 알권리가 있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 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식품을 구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성명을 발표함.

❍ 미국 식음료제조협회(GMA)는 과학에 근거를 둔 연방수준의 통일된 비(非)GMOs (Non-GMOs)와 GMOs의 표시 기준이 있다면, 미국의 50개주 어디에서나 통일 기준 하에서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 주법과 지방자치단체별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식품잡화 공급 망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함.

※ 자료: JETRO(2015.05.01)

미국, NAFTA 무역 파이프라인 운송 점유율 고조

USDOT, NAFTA 체결국과의 무역액 증가 발표

❍ 미국 운수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하면, 201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와의 무역액(수출입)은 캐나다가 6,582억 달러(전년대비 3.8% 증가), 멕시코가 5,345억 달러 (5.5% 증가)로 총 합계는 1조 1,927억 달러(4.5% 증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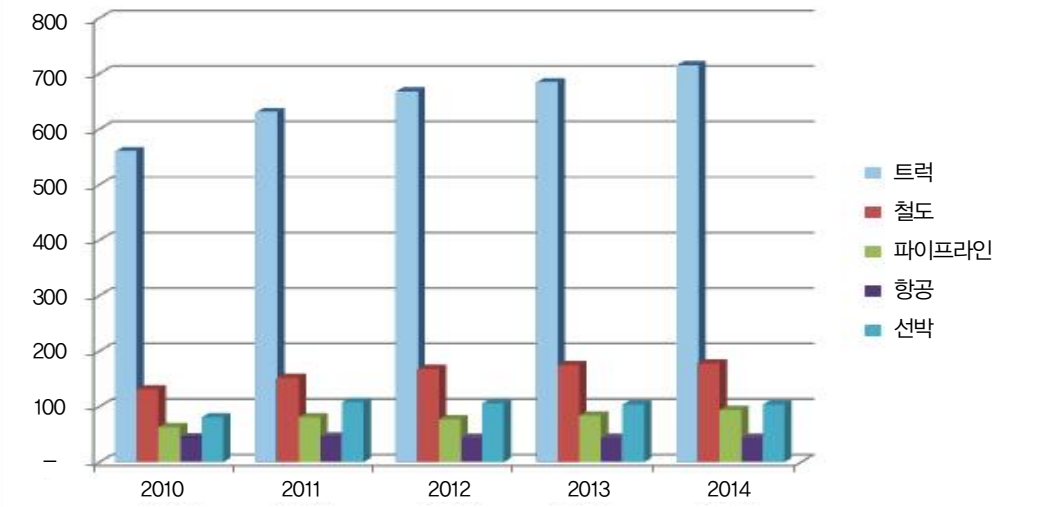
- 운송수단별로는 트럭, 철도, 선박, 파이프라인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파이프라인의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주된 운송수단은 트럭으로 무역액의 약 60%를 차지하였음.

NAFTA 무역액 5년 연속 확대

❍ 미국 운수부(3월18일 발표)에 의하면,[1] 2014년 NAFTA 체결국(캐나다와 멕시코)과

그림 1 NAFTA 체결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무역액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border Freight Data, (http://transborder.bts.gov/transborder/)2015.02.

1) (http://www.rita.dot.gov/bts/press_releases/bts013_1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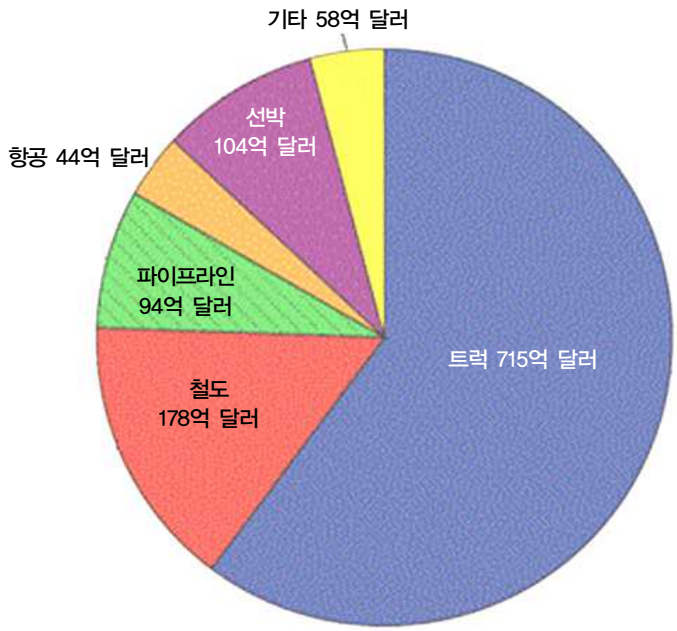
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하여 1조 1,927억 달러가 되었음. 금융위기에 따른 저조 이후, 2010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였음<그림 1 참조>.

- 운송수단별 무역액은 트럭이 7,150억 달러(전년대비 4.5% 증가), 철도 1,780억 달러(전년대비 1.5% 증가), 선박 1,040억 달러(전년대비 0.2% 증가), 파이프라인 940억 달러(전년대비 12.5% 증가), 항공이 440억 달러(전년대비 0.2% 감소)이었음.
- 성장률이 가장 컸던 운송수단은 파이프라인으로 원유가격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액도 증가하였음.

❍ 운송수단별 점유율은 트럭이 59.9%(전년대비 증감 없음), 철도 14.9%(0.5포인트 감소), 선박 8.7%(0.4포인트 감소), 파이프라인 7.9%(0.6포인트 증가), 항공운송이 3.7%(0.2포인트 감소)이었음.

- 기록을 시작한 2004년과 비교하면, 점유율이 확대된 것은 파이프라인(2.5포인트 증가)과 선박(2.2포인트 증가)이며, 트럭(3.7포인트 감소), 항공 (0.8포인트 감소), 철도 (0.3포인트 감소)는 점유율이 감소되었음.

그림 2 운송수단별 점유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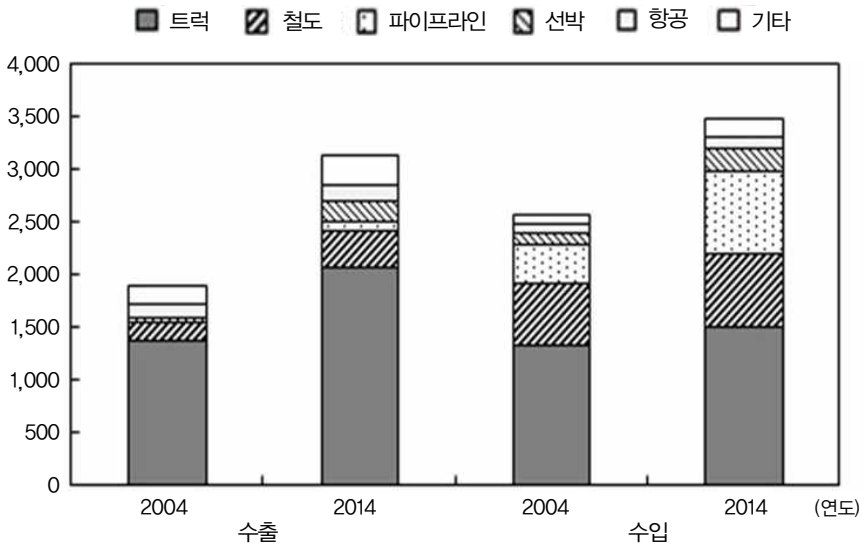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border Freight Data, (http://transborder.bts.gov/transborder/)2015.02.

❑ 미국-캐나다, 수출에서는 선박, 수입에서는 파이프라인 증가

❍ 캐나다와의 2014년 수출에서는 트럭이 65.6%를 차지하였고, 철도는 11.1%, 선박은 5.7%를 차지하였음<그림 3 참조>.

그림 3 미국-캐나다 무역액 2004년과 2014년 비교

단위: 억 달러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border Freight Data, (http://transborder.bts.gov/transborder/)2015.02.

- 적재물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트럭은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 (390억 달러)과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373억 달러), 철도는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111억 달러)과 '광물성 연료 등'(43억 달러), 선박은 '광물성 연료 등'(153억 달러)과 '광석, 광재(鑛滓) 및 재(灰)'(11억 달러) 등이었음.
- 2004년과 운송수단별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트럭은 6.2포인트 감소하였고, 선박은 4.0포인트 증가하였음.

❍ 2014년 수입에서는 트럭이 43.1%, 파이프라인이 22.8%, 철도가 20.0%이었음. 적재물의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트럭은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296억 달러)와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189억 달러)이었으며, 철도는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262억 달러)과 '광물성 연료 등'(80억 달러)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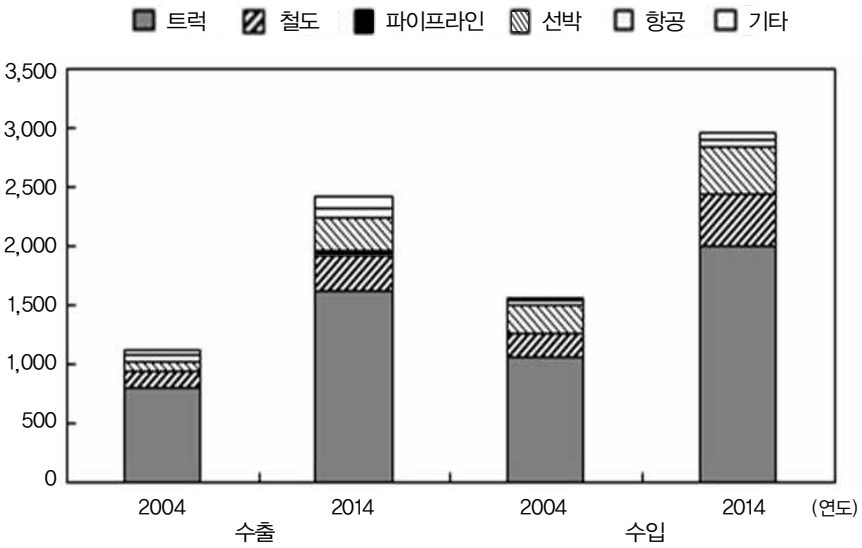
- 2004년과 운송수단별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트럭이 8.8포인트 감소, 파이프라인은 8.4포인트 증가하였음.

❑ 미국-멕시코, 수출입 트럭 운송 압도적

❍ 2014년 멕시코와의 수출에서는 트럭이 67.0%을 차지하였고, 철도 12.3%, 선박이 11.3%를 차지하였음<그림 4 참조>.

그림 4 미국-멕시코 무역액 2004년과 2014년 비교

단위: 억 달러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border Freight Data, (http://transborder.bts.gov/transborder/)2015.02.

- 적재물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트럭이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370억 달러), '전기기기 및 부품'(342억 달러), 철도가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66억 달러),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33억 달러), 선박이 '광물성 연료 등'(161억 달러), '유기화학품'(44억 달러)이었음.
- 2004년과 운송수단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트럭은 4.6포인트 감소, 선박은 4.5포인트 증가하였음.

❍ 2014년 수입에서는 트럭이 67.9%, 철도가 15.0%, 선박이 13.0%를 차지하였음. 적재물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트럭이 '전기기기 및 부품'(542억 달러),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394억 달러), 철도가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324억 달러),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42억 달러), 선박이 '광물성 연료 등'(292억 달러),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46억 달러)이었음.

- 2004년과 운송수단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선박이 2.9포인트 감소, 철도가 2.0포인트 증가하였음.

※ 자료: USDOT(2015.04.30)

FAO, 비옥한 토양은 식량 생산의 기반

FAO, 식량 생산의 기반인 토양의 중요성 강조

❍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토양주간에 FAO 토지수자원부장(Moujahed Achouri)은 비옥한 토양은 세계의 식량생산의 기반이며, 공공정책이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세계토양주간에는 78개국에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와 토지의 통제에 대처하고 있는 550명을 이상의 참가자가 결집하였음.

❍ FAO 토지수자원부장은 '토양은 식량영양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토양자원에 대한 압력은 위기적인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부언함.

- 토양은 식량생산의 95%를 지탱하고 있으며, 토양 속에는 지구상 다양한 생물의 4분의 1 이상이 서식하고 있음을 강조함.
- 또한 의약품 재료의 주요 공급원이며 탄소순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 세계의 토양황폐화는 약 33%와 경보를 발하는 수준이며, 식량안전보장을 위협하여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함.

❍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보다 비옥해진 토양에서 더욱 많은 식량 생산이 가능해져 식량증산에 공헌하게 됨.

❍ FAO는 세계의 토양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가 연계하여 토양황폐화를 저감시키고 이미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도록 호소함.

2015 세계 토양의 해

❍ 세계 토양의 해인 금년에 개최된 '세계토양주간 2015'는 평상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건강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는 토양의 장점에 대해 그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올해 토양주간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토양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음.

- 식량영양안전보장, 기후변화의 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인류의 포괄적인 요구에 따라야 한다면, 토양자원의 가치는 세계적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함.

※ 자료: FAO(2015.04.20)

인도, 카르나타카주 농민 금융지원 등 중점 예산안

❑ 인도 카르나타카주(Karnataka州), 주 의회에 2015년 예산안 제출

❍ 3월 13일 카르나타카주 주지사겸 재무장관은 주(州) 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국민회의파가 정권에 제출한 세 번째 예산안임.
-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 등 농업을 중점으로 한 정책을 내세웠음.
- 주(州) 경제를 유지하는 주도(capital) 방갈로르(Bangalore)의 기반시설 정비, 주변 공업단지 정비에도 계속 주력하기로 함.

❑ 농업부문, 예산총액의 16.2%

❍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의 예산총액은 1조 4,253억 4,000만 루피아[2]로, 작년 당초 예산대비 3.3%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경상지출은 1조 1,545억 루피아, 자본지출은 2,635억 루피아임.

- 재정적자는 주내총생산(GSDP) 대비 2.75%로 부채총액은 GSDP 대비 24.56%로 예상되고 있지만, 주(州)의 재정책임법에서 규정된 상한 내(25%)에 있음.

❍ 농업관련 부문 예산은 2,304억 루피아로 작년 예산인 2,108억 루피아에 비하여 9.3% 증가하였음.

- 농업은 예산총액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점유율임. 농업관련 부문의 주요 예산조치는 이하와 같음.
  ① 농업분야의 발전 위하여 전문가를 지도자로 한 새로운 조직 '비전 그룹'을 설립하고, 농업 기반시설 개선에 388억 루피아를 계상함.
  ② 신(新)관개정책을 수립하고, 관개사업에 대하여 1,295억 6,000만 루피아를 계상함.
  ③ 농협 경유 농업금융의 대출 금리를 30만 루피아 이하의 경우는 0으로 함. 또한 30만~100만 루피아의 대출 금리를 3%로 함.
  ④ 농업인의 용이한 농업자재와 기계 조달을 위하여 278곳에 서비스센터를 설치함.

2) 한화로 약 24조 2,735억 4,020만 원(2015년 5월 7일 기준).

⑤ 원예, 양어, 유기농업 등 발전에 208억 루피아를 계상함.

⑥ 비다르, 웃타르칸나다, 탁신칸나다 지역에 새로운 농작물구입전용센터를 설립하여 농업인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

⑦ 극빈층에 대한 식량보조로 빈곤 라인 이하의 약 1,000만 가구에 대하여 월 5kg의 곡류를 무료로 배포하는 계획을 계속 실시함. 식량보조금으로서 212억 루피아를 계상함.

❍ 서민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부가가치세(VAT)를 그대로 두었음.

- 주된 변경으로는 인도산 술에 적용되는 주세(酒稅)를 일률 6～20% 인상, 디젤과 가솔린의 물품세를 1% 인상, 담배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17%에서 20%로 인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비롯한 교육 부문 강화에 약 2,010억 루피아를 계상함.

- 단 교육에 대한 예산배분은 전년대비 약 5.7% 감소하였음.
- 각 학교와 대학의 IT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학생에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와 PC를 제공하는 등 젊은 유권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담고 있음.

❑ 방갈로르(Bangalore)의 기반시설 개발 주력

❍ 주경제의 약 30%을 차지하는 방갈로르(Bangalore)의 지역개발에 477억 루피아의 예산을 계상함. 그 가운데 139억 루피아를 방갈로르(Bangalore) 시청이 실시하는 주요 기반시설 정비에 할당함. 방갈로르(Bangalore) 개발의 주된 프로젝트는 이하와 같음.

① 벨라리로드, 쟈야마하르로드, 바네르갓타로드, 바르루토르로드 등 교통정체가 심각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함.

② 방갈로르(Bangalore) 주변 6곳에 쓰레기 처리시설(합계 처리능력 2,800톤)을 건설하기 위하여 27억 루피아를 지출함.

③ 1일당 5억 ℓ를 송수할 수 있는 신관수로와 방갈로르(Bangalore) 시내 7곳에서 물 처리시설(처리능력은 합계 1일당 1억 5,000만 ℓ)을 건설함.

④ 지하철(2011년 10월 일부 개업) 1단계 작업을 2015년 12월까지 완성하고, 2단계의 토지수용을 시작함. 현 시점에서 1단계는 90% 완성되었음.

❍ 이 외에 주정부는 공업화 추진을 위하여 툼쿠르(Tumkur)의 국가투자제조지구(NIMZ)

프로젝트를 가속화되는 것, 방갈로르(Bangalore) 주변에 있는 항공산업전용 공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공장의 건설과 기타 공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10억 루피아를 계상함.

- 전력용량을 3,361MW 증대(그 중 태양발전용량은 1,000MW)하기 위하여 약 1,287억 루피아를 계상하는 것 등 공업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계획도 밝힘.

표 1 카르나타카주(Karnataka州) 경제 성장 동향

단위: 천만 루피아, %, 루피아

연도	주내총생산(GSDP)				1인당 GSDP
	농업	공업	서비스업	합계	
2005	34,284	54,716	95,277	184,277	30,138
	9.9	8.4	12.0	10.5	9.2
2006	33,310	64,043	105,307	202,660	32,911
	2.8	17.0	10.5	10.0	8.7
2007	37,431	70,983	119,788	228,202	35,776
	12.4	10.8	13.8	12.6	11.3
2008	39,279	74,633	131,509	245,421	42,195
	2.3	5.1	9.8	7.1	5.9
2009	39,837	73,542	134,211	247,590	42,286
	4.1	△1.5	2.1	10.2	0.2
2010	46,279	80,547	145,895	272,721	46,091
	16.2	9.5	8.7	34.4	9.0
2011	43,211	83,052	156,521	282,784	47,304
	△6.6	3.1	7.3	3.7	2.6
2012	44,262	82,795	172,934	299,991	49,682
	2.4	△0.3	10.5	6.1	5.0
2013	48,436	86,273	186,747	321,456	52,719
	9.4	4.2	8.0	7.2	6.1
2014	50,636	90,031	203,439	344,106	55,898
	4.5	4.4	8.9	7.0	6.0

주: 하단은 전년도와 비교한 수치임.

자료: Government of Karnataka. 2014. Economic Survey Reports 2013-2014. Government of Karnataka.

2014년 주(州) 경제 성장률은 7.0% 전망

❍ 예산안에 앞서 발표된 2014년판 카르나타카주 이코노믹 서베이(Economy Survey)에 의하면, 주 경제는 IT 등 서비스 부문의 호조로 2014년 GSDP 성장률은 7.0%로 예상하고 있음. 2013년의 7.2%에서 둔화될 전망임.

❍ 이코노믹 서베이에 의하면, 2014년에는 카르나타카주의 약 90% 지역이 가뭄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이 4.5% 증가하였음(2013년 9.4% 증가).

- 또한 공업부문은 4.4% 증가(2013년 4.2% 증가), 서비스 부문은 8.9% 증가(2013년 8.0% 증가)할 전망임.
- GSDP에서 차지하는 각 부문의 점유율은 농업이 14.7%(2014년 15.1%), 공업은 26.2%(2014년 26.8%), 서비스는 59.1%(2014년 58.1%)를 차지하였음.
- 2014년 1인당 GSDP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5만 5,898루피아였음.

※ 자료: JETRO(2015.04.21)

베트남, 농업투자 시 토지취득·유통 등 과제

❑ 베트남, 농업분야 외국투자 유치에 주력

❍ 최근 베트남 정부는 근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업 발전, 안전 및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고조 등에 부응하고자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촉진에 주력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농업분야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를 정비하고 있음.
- 법인세는 2015년 1월부터 농수산분야의 재배, 가축사육, 양식, 가공 및 식림사업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율을 15%로 하고 있음(표준세율 22%, 법률 71/2014/QH13).
-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이나 특별히 곤란에 처해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유리한 감면세 조치도 적용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도 2015년 1월부터는 비료, 농업기계, 사료에 대한 세율이 5%에서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 2013년 12월 공포된 정령 '210/2013/NQ-CP'에서 규정하는 농업 특별우대 업종으로 인정되면, 업종과 진출할 지역에 따라 토지임차료의 감면이나 종업원용 사택용지임차료의 면제, 전시회 출전 시 보조금 지급 등 우대도 받을 수 있음.

❍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1년 내내 냉량한 고원기후로 알려진 람동성(Tỉnh Lâm Đồng)과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 델타지역, 북부의 선라성(Sơn La Province) 등에 농업관계자가 진출하였음.

❑ 토지취득 시 개정 투자법 운용에 주의 필요

❍ 외국기업이 투자 안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에서 임대(토지사용권)하게 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게 됨.

- 임차료는 매년 지불 혹은 전 기간분 일괄 지불 중 선택해야 함(토지법 제56조).
- 총리가 결정하는 대형안건을 제외하고, 토지의 임차결정권은 각 성의 인민위

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임차 기간은 최장 50년임(토지법 제59조, 제126조). 성 수준의 안건 신청 절차는 이하와 같음.

① 진출 후보지에 관한 허가 취득(토지합의 신청)을 각 성 계획투자국에 신청(공업단지진출의 경우, 본 신청은 생략).

② 투자 프로젝트 신청 및 회사 설립 신청을 각 성 계획투자국(공업단지진출의 경우 공업단지관리위원회)에 신청.

③ 후보지 취득에 관한 수속을 각 성 자원절약환경국에 신청.

❍ 상기 ②와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 개정 투자법·기업법이 시행됨. 현행법에서는 투자 증명서 취득으로 충족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투자 등록 증명서와 기업등기 증명서 등 두 개의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상기 ③과 관련하여 기존 토지사용권자의 퇴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수속이 완료됨.

- 예를 들어, 람동성의 경우 20일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퇴거가 있을 경우, 퇴거 배상·보조·이주 계획 책정 및 기존의 토지사용권자에 대한 배상금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됨.
- 퇴거 수속의 실시 조직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는 성 인민위원회가 그 책임을 지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체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성 인민위원회에 확인이 필요함.

❍ 퇴거 대상에 지불되는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닌 성 인민위원회에서 지불되지만, 인민위원회 측에서 원금 확보 목적으로 배상금의 선불에 대한 협력이 요청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선불금은 토지임차료로 상쇄되지만,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당지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농업관계자로부터 보고되고 있으며 자금 융통 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함.
- 또한 배상금 선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해당 성 인민위원회에 사전확인도 필요함.

❍ 토지취득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농업자체의 문제도 얽혀있음.

- 베트남에서는 법령에 의한 농지사용권의 제한과 상속에 의한 분배 등으로 농가 1호당 경작면적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음. 특히 북부를 중심으로 각 농가가

보유한 농지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외국투자가가 일정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관계자가 늘어나 조정에 난항을 겪는 요인이 됨.
- 이러한 토지 문제와 관련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투자가가 직접 나서는 것은 큰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출할 지역의 인민위원회나 그 고장에 네트워크를 가진 제휴처 등 그 고장의 지역민과의 협력이 필요함.

❑ 농업자재 조달 및 유통 등 개선의 여지

❍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게는 토지취득 이외에도 몇 가지 과제가 지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기후나 토양, 작물에 발생하는 병 등 본국과의 자연환경 차이는 물론 농업인재의 자질 면에서도 향상의 여지가 있음.

❍ 베트남에서 농업자재 조달 시 농협과 같은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자금력이 부족한 농가가 직접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낮은 품질로 요구하는 수준에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출하 시 고품질 작물을 수확하여도 도로 기반시설과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미정비 등으로 유통 단계에서 부패 가능성도 문제가 됨.
- 토지취득에서 지적한 사항에서와 같이 농지가 소규모로 기계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점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신품종 도입 시 식물검역 면에서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많은 과제가 부각되고 있음.

- 향후, 이러한 과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된다면, 관련 서비스 분야 등으로의 진출도 기대됨.
-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베트남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자료: JETRO(2015.04.30)

네덜란드,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로 농업 영향

네덜란드,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손실 우려

❍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Wageningen University)은 EU-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네덜란드 농업부문 전망을 발표함.

- EU-남미공동시장 교역 시 EU는 제조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아메리카 국가는 농업부문에 비교우위가 있음.

❍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이 양측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EU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클 것으로 전망됨.

-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에 따른 정량분석 결과, EU 육류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가금류 부문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고품질 농산물과 유제품 부문 긍정적 전망

❍ 농산물 공급 경쟁력을 가진 남미공동시장은 EU시장의 증가하는 농산물 수요를 흡수하고 EU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고품질 농산물의 경우, 여전히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의 고품질 신선 육류부문 또한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남미공동시장의 육류수입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는 남미공동시장으로의 네덜란드산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수입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유럽시장에서 주요 수출국 지위가 강화될 전망임.

- 네덜란드산 과일과 채소 부문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 유제품 부문은 수출승인 시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완화되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남미공동시장의 유제품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유제품 수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유제품 부문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비관세 완화 조치 논의 필요

❍ 현재 비관세장벽 및 교역마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하여 수출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무역협상 시, 비용감소를 중점으로 하여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비관세관련 규정과 기준을 재도입하고, 검사·인증·감시를 통한 적합성 평가 등 관련 활동 등을 촉진시킴으로써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무역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방어적 이해관계 충돌

❍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양측 비교열위산업에서 개방에 대한 방어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

- EU는 농업부문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제조·투자·정부조달부문에서 방어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
- 양측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단기간 '완전히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의 신속한 진전 필요

❍ 최근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FIIA)보고서에 따르면, 남미시장에서 중국은 EU대체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지금이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강조함.
-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의 협상안 교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EU 회원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4.10)

자료 작성 : 이혜은 전문연구원, 홍예선 연구조원, 박지연 연구원